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2021. 09.

(가칭)배곧대교주식회사

목 차

1. 계획의 개요	1
2.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개요	2
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2
1) 공고일자	2
2) 공람기간 및 장소	2
3) 주민설명회 개최	2
4) 공개방법	2
나. 주민설명회 개최	8
1) 주민설명회 개최 개요	8
2)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	8
3.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12
가. 협의기관의견 수렴결과	12
나. 행정기관의견 수렴결과	13
다. 주민의견 수렴결과	40

1. 계획의 개요

- **본 사업은 시흥시 정왕동 배곧신도시~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송도국제도시를 연결하는 (가칭)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임**
- **시흥시와 송도국제도시간 간선도로망 구축으로 편익 발생**
 - (가칭)배곧대교를 경로로 서울과 수도권 전역에 신규 대안노선 제공하고, “송도~시흥~안산” 간 가장 빠른 길 형성으로 시간단축 등 통행비용 절감효과와 인천신항, 인천남동공단, 시흥시화산단, 안산반월공단 등의 주요 산업시설 접근성 향상시키고자 함
- **인접한 두 경제자유구역의 연결하는 기반시설 제공**
 - 황해경제자유구역 시흥배곧지구와 인접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를 연결하는 기반시설로서의 (가칭)배곧대교를 건설함과 동시에 서울대(배곧)와 연세대(송도) 등과 다수의 기업이 참여하는 4차산업 연구개발 과제인 「육·해·공 무인이동체」 연구의 “산·학·연 협력” 기회를 확대코자 함
- **기존 동서축 연결도로의 도로용량 초과에 따른 대응**
 - 송도와 배곧을 연결하는 동서축 연결도로[아암대로~고잔영업소~제3경인선(정왕IC)]의 도로용량 도달에 따른 8차로 확장 압력과 장래 송도국제도시 완료시 추가적인 교통지정체에 대한 대안노선으로 (가칭)배곧대교 건설이 필요함
- **지역간 도시균형 발전 및 연계기능 강화**
 - (가칭)배곧대교를 통한 직접 연계로 배곧신도시와 송도국제도시 두 도시간 상호보완 및 균형발전과 두 도심의 대중교통체계 개선으로 주민들의 편의성 증대 및 생활권 확대를 도모코자 함
- **인근 관광지 접근성 강화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 송도국제도시의 도심관광자원과 시흥시의 해양관광자원의 연계로 시너지 효과 기대와 더불어 외부 관광객 수요 유발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송도갯벌(습지보호지역) 환경영향 최소화 고려**
 - 배곧과 송도의 사이에 위치한 송도갯벌(습지보호지역)의 환경영향 최소화를 고려하여 핵심 보호지역을 우회하는 노선선정 및 전 구간 교량구조물 계획, 강교배제, 야간생태계를 교란하는 영업시설의 습지보호지역 위치 배제, 점유면적을 최소화하는 교각형식 선정 등 환경영향 최소화를 기본원칙으로 교량계획을 수립함
- **지역주민 교량 건설요구 반영**
 - (가칭)배곧대교 건설사업 필요성에 대하여 인근지역 거주자(시흥시,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배곧신도시 등)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건설사업 필요성(긍정률) 전체 77%, 건설사업 동의율 전체 88%로 조사됨

○ **지역 명소화(Land Mark) 역할**

- 지역경관과 조화되며 상징성이 우수한 특수교 형식을 적용하여 배곧신도시~송도국제도시 두 도시간 관문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지역 대표명소로 활성화하여 랜드마크 이미지 부각

2. 주민 등의 의견수렴 개요

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1) 공 고 일 자

- 시흥시 공고 제2020-2901호 (2020.11.20)

2)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2020년11월20일(금) ~ 2021년01월04일(월) (30일,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 공람장소
 - 시흥시 : 환경정책과, 혁신성장사업단 경제자유구역과, 배곧동 행정복지센터
 - 인천광역시 : 환경기후정책과, 연수구청 환경보전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환경녹지과
 - 시흥시청 홈페이지(<http://www.siheung.go.kr>)
 - 연수구청 홈페이지(<https://www.yeonsu.go.kr>)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http://www.ifez.go.kr>)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eiass.go.kr>)

3) 주민설명회 개최

- 시흥시
 - 2020년12월04일(금) 오후 4시
 - 배곧동 주민센터
- 인천광역시
 - 2020년12월09일(수) 오후 4시
 - 인천 송도 컨벤시아

4) 공 개 방 법

- 공람기간 시작일로부터 공람기간 완료 후 7일 이내(2021년01월11일 까지)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 제출서 양식

공 고 문

시흥시 공고 제2020-2901호

(가칭)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에 따라 (가칭)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관한 주민(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자 주민 공람 및 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1. 20.
시 흥 시 장

1. 사업개요

- 계 획 명 :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 위 치 : 시흥시 배곧신도시 ~ 인천광역시 송도국제도시
- 사업규모 : 연장= 1.89km, 폭(m)= 20.0m ~ 24.2m(왕복4차로)
- 사업기간 : 공사시(2021년 ~ 2025년, 48개월), 운영시(2025년 ~ 2055년, 30년)
- 시 행 자 : (가칭)배곧대교 주식회사

2. 주민공람

- 공람기간 : 2020. 11. 20.(금) ~ 2021. 1. 4.(월)(30일,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 공람장소
 - 시흥시 : 환경정책과, 혁신성장사업단 경제자유구역과, 배곧동 행정복지센터
 - 인천광역시 : 환경기후정책과, 연수구청 환경보전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환경복지과
- 공람내용 :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초안)
- 관계도서 : 공람장소에 비치
- ※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게재 : 시흥시 홈페이지(<http://www.siheung.go.kr>), 연수구청 홈페이지(<https://www.yeonsu.go.kr>),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http://www.ifez.go.kr>) 이상 초안 요약문,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eiass.go.kr>) 초안 전문

3. 주민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구 분	일 시	장 소
시흥시	2020.12.04(금) 16:00	배곧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2020.12.09(수) 16:00	송도컨벤시아

○ 인원제한 : 코로나19 방역관리지침 15단계(100인 이상 모임 금지) 따라 부득이 50명으로 제한

※ 제한인원 초과 시 입장이 불가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마스크 미착용, 발열 및 호흡 증상자는 입회 불가하며, 생활속 거리두기 준수 필요(참석자 명부 작성 협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격하에 따라 장소 및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주민의견제출

- 제출기한 : 공람기간 내 또는 공람기간 완료 후 7일 이내(2021년 01월 11일까지)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제출서 양식으로 서면(우편 또는 방문) 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 의견 등록
- 제출장소
 - 시흥시 : 환경정책과, 혁신성장사업단 경제자유구역과, 배곧동 행정복지센터
 - 인천광역시 : 환경기후정책과, 연수구청 환경보전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환경복지과

5. 기타사항

- 본 공고문은 시흥시, 연수구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공보, 중앙 일간신문 및 지역 일간신문에 게시하였으며, 공람 및 설명회 개최 일정은 추가 통보하지 않고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혁신성장사업단 경제자유구역과(☎ 031-310-6973) 및 (가칭)배곧대교 주식회사(☎ 031-365-52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간신문 (아시아투데이)

SOCIETY

법무부 '尹 대면 감찰' 일단 보류

“대검 비협조… 원칙따라 진행”
조사 재시도·직무정지 검토 전망

법무부가 19일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접 조사를 시도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실상 거부해 무산됐다.

이날 법무부의 조사 시도는 일단 무산되긴 했으나, 향후 추미에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 등을 밟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어 법무부와 대검찰청 간의 긴장감은 여전히 고조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윤 총장에
대한 대면 조사를 위해 검찰담당관실
인력을 대검에 보내는 빔안을 추진했

이후 법무부는 “법무부 검찰관실은 검찰총장에 대한 검찰을 위한 진상확인
을 위해 대검을 방문해 조사하고자 하
였으나 대검에서 현조하지 않아 발문조

아시아투데이 6

“사망 16개월 영아 모, 학대치사”
검찰 송차…父는 방임만 적용

'생후 16개월 입양아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학대 혐의를 받는 부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9일 "피해 아동의 엄마에게 아동학대 치사와 방임, 아빠에게 방임 및 방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두 사람은 영아를 장기간에 걸쳐 방임·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다수의 참고인 조사와 폐쇄회로(CCTV) 영상, 피해 아동의 진료 기록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해 혐의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양이 사망하기 이전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으나 그때마다 경찰관과 아동보호복지관을 한대 증거를 찾지

못하고 A양을 부모에게 돌려보냈다. 이를 두고 경찰의 안일한 초동 대처가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찰은 "앞선 조사에서 혐의없음 또는 내사 종결됐던 사안들도 이번에 보강 수사를 거쳐 일부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며 "해당 사건을 처음 수사했던 부서는 검찰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현빈 기자·김예슬 수습기자

는 19일 상심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자택에서 일하는 근로자 9명에게 총 22차례에 걸쳐 유선하

11월 20일 그리스도

“이제부터

5 491

[illegible]

1970년대 이전

Downloaded from <http://ajph.org/> at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on June 11, 2015

— 4 —

2020년 11월 20일 금요일

[illegible]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보도플래너이벤트

로그아웃

개인정보수정

사이트맵

사용자 메뉴얼

환경영향평가소개

사업조회 및 정보입력

협의통계

국민참여

건강영향평가

국민참여 Public participation

협의진행현황

평가항목 결정내용 공람

평가서 초안 공람

행정처분현황

사용자지원

평가서 초안 공람 -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업명	(가칭)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사업위치	선형 소재지 면적 폭 연장 시점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배곧1로 27) 배곧신도시 종점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송도문화로 119) 송도국제도시
협의대상 (협의관련법령)	행정계획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9조에 따른 민간부문 제안사업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사업구분	도시개발 /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업개요	사업시행자 : (가칭)배곧대교주식회사 승인기관 : 시흥시 사업규모 : 1.89km 사업비 : 1,904 억원

초안공람

주민의견수렴

초안공람

초안	배곧대교_0300_개발기본계획의 입지에 대한 대안_(완).pdf 배곧대교_0400_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_(완).pdf 배곧대교_0500_지역개발_(완).pdf 배곧대교_0600_협의회심의내용 및 항목결정내용공개_(완).pdf 배곧대교_0700_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_(완).pdf 배곧대교_08110_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_(완).pdf 배곧대교_08120_해양동식물상_(완).pdf 배곧대교_08130_371페이지 배곧대교 종평면도(불지).pdf 배곧대교_08130_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_(완).pdf 배곧대교_08140_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_(완).pdf 배곧대교_08150_수환경의 보전_(완).pdf 배곧대교_08211_기상_(완).pdf 배곧대교_08212_대기질_(완).pdf 배곧대교_08213_온실가스_(완).pdf 배곧대교_08214_토양_(완).pdf 배곧대교_08215_소음진동_(완).pdf 배곧대교_08220_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_(완).pdf 배곧대교_08230_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친환경적 자원순환)_(완).pdf 배곧대교_08310_토지이용_(완).pdf 배곧대교_09000_종합평가 및 결론_(완).pdf 배곧대교_0000_표지목차_(완).pdf 배곧대교_0100_요약문_(완).pdf 배곧대교_0200_계획의 개요_(완).pdf 배곧대교 전략(초안)_통합본.pdf 배곧대교_10000_부록_(완).pdf		
초안 공고일	2020.11.20	초안공람 기간	2020.11.20 ~ 2021.01.04
공람 장소	시흥시 : 환경정책과, 혁신성장사업단 경제자유구역과, 배곧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 환경기후정책과, 연수구청 환경보전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환경녹지과		
설명회 일시	20201204(금) 16:00, 20201209(수) 16:00		
설명회 장소	시흥시 : 배곧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 송도컨벤시아		
의견제출 기간	2020.11.20 ~ 2021.01.11		
부서명		전화번호	

목록

시흥시

포털사이트 | 맞춤형 메인 | 시흥시의회 | **홍화면 설정하기**

자주찾는 메뉴

language GO

통합검색

Q

코로나19 | 대청매기물 | 민원서식 | 민원신청 | K-골든코스
시흥배곧서울대병원 | 해로도로 | 보건당

f | | | | |

참여소통

증합민원

열린행정

시정소식

시흥소개

분야별정보

시정소식

시정정보

- 새소식
- 행사일정
- **고시/공고**
- 타기관 고시/공고
- (구)고시/공고
- 입찰정보
- 입법예고
- 채용 및 모집정보
- 분양공고
- 코로나19(상황보고)
- 코로나19(보도자료)
- 코로나19(힘내라시종)
- 코로나19(지원정책)
- 확진환자 동선식제 신고센터

시정간행물

미디어시호

고시/공고

시정소식 > 시정정보 > 고시/공고

(가칭)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전락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고시공고번호 : 시흥시 공고 제2020-2901호 | 등록일 : 2020-11-20 | 담당부서 : 경제자유구역과(송수석)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에 따라 (가칭)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전락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관한 주민(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자 주민 공람 및 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전락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 1부.
3. 주민의견 제출서 1부. 끝.

첨부 파일

· (가칭)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전락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pdf

· 공고문(안).hwp

· 주민의견 제출서.hwp

목록

인천광역시 연수구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검색 |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증합민원

행정정보

분야별 정보

참여·알림

연수소개

문화관광

참여·알림

알림광장

- 공지사항
- **고시공고**
- 채용공고
- 구보
- 보도자료
- 구내식당

적극행정

구청정보

제안합니다

위원회방

주민참여예산방

구청에바란다

입찰정보공개

여론조사광장

연수인상구민추천제

사이버반상회

자유마당

타기관 고시/공고

> 참여·알림 > 알림광장 > 고시공고 > 타기관 고시/공고

연수구 고시/공고

타기관 고시/공고

(가칭)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전락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작성자	환경보전과	작성일	2020년 11월 20일
담당부서	환경보전과	전화번호	749-7902

첨부파일 공고문(안).hwp (0.02MB) **미리보기**
 (가칭)배곧대교_민간투자사업_전락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초안)_요약문.pdf (4.91MB) **미리보기**

시흥시 공고 제2020-2901호

(가칭)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전락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에 따라 (가칭)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전락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관한 주민(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자 주민 공람 및 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1. 20.
시 흥 시 장

목록

나. 주민설명회 개최

1) 주민설명회 개최 개요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등의 수렴은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및 시행령 제13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공람 등), 제14조(주민 등의 의견제출 방법 등), 제15조(설명회의 개최)에 따라 초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 설명회를 실시함

2)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

주민의견 제출	공청회 요청 수	
	필요	불필요
7건	3건	4건

주민설명회 개최 전경	
시흥시	인천광역시
	
	
	

시흥시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1/2)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① 사 업 명	(가칭)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전락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초안)				
② 사 업 시 행 자	(가칭) 배곧대교주식회사				
③ 설 명 회 일 시	2020. 12. 04(16:00)	④ 설명회장소	배곧동 주민센터		
연번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비 고	
1				36.31	
2				36.34	
3				36.35	
4				36.37	
5				36.38	
6				36.39	
7				36.40	
8				36.41	
9				36.42	
10				36.43	
11				36.44	
12				36.45	
13				36.46	
14				36.47	
15				36.48	
16				36.49	
17				36.50	
18				36.51	
19				36.52	
20				36.53	
21				36.54	
22				36.55	
23				36.56	
24				36.57	
25				36.58	
26				36.59	
27				36.60	
28				36.61	
29				36.62	
30				36.63	
31				36.64	
32				36.65	
33				36.66	
34				36.67	
35				36.68	
36				36.69	
37				36.70	
38				36.71	
39				36.72	
40				36.73	
41				36.74	
42				36.75	
43				36.76	
44				36.77	
45				36.78	
46				36.79	
47				36.80	
48				36.81	
49				36.82	
50				36.83	
51				36.84	
52				36.85	
53				36.86	
54				36.87	
55				36.88	
56				36.89	
57				36.90	
58				36.91	
59				36.92	
60				36.93	
61				36.94	
62				36.95	
63				36.96	
64				36.97	
65				36.98	
66				36.99	
67				37.00	
68				37.01	
69				37.02	
70				37.03	
71				37.04	
72				37.05	
73				37.06	
74				37.07	
75				37.08	
76				37.09	
77				37.10	
78				37.11	
79				37.12	
80				37.13	
81				37.14	
82				37.15	
83				37.16	
84				37.17	
85				37.18	
86				37.19	
87				37.20	
88				37.21	
89				37.22	
90				37.23	
91				37.24	
92				37.25	
93				37.26	
94				37.27	
95				37.28	
96				37.29	
97				37.30	
98				37.31	
99				37.32	
100				37.33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① 사 업 명	(가칭)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전락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초안)				
② 사 업 시 행 자	(가칭) 배곧대교주식회사				
③ 설 명 회 일 시	2020. 12. 04(16:00)	④ 설명회장소	배곧동 주민센터		
연번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비 고	
1				36.3	
2				36.1	
3				36.4	
4				36.9	
5				36.0	
6				36.4	
7				36.2	
8				36.9	
9				36.9	
10				36.9	
11				36.9	
12				36.9	
13				36.9	
14				36.9	
15				36.9	
16				36.9	
17				36.9	
18				36.9	
19				36.9	
20				36.9	
21				36.9	
22				36.9	
23				36.9	
24				36.9	
25				36.9	
26				36.9	
27				36.9	
28				36.9	
29				36.9	
30				36.9	
31				36.9	
32				36.9	
33				36.9	
34				36.9	
35				36.9	
36				36.9	
37				36.9	
38				36.9	
39				36.9	
40				36.9	
41				36.9	
42				36.9	
43				36.9	
44				36.9	
45				36.9	
46				36.9	
47				36.9	
48				36.9	
49				36.9	
50				36.9	
51				36.9	
52				36.9	
53				36.9	
54				36.9	
55				36.9	
56				36.9	
57				36.9	
58				36.9	
59				36.9	
60				36.9	
61				36.9	
62				36.9	
63				36.9	
64				36.9	
65				36.9	
66				36.9	
67				36.9	
68				36.9	
69				36.9	
70				36.9	
71				36.9	
72				36.9	
73				36.9	
74				36.9	
75				36.9	
76				36.9	
77				36.9	
78				36.9	
79				36.9	
80				36.9	
81				36.9	
82				36.9	
83				36.9	
84				36.9	
85				36.9	
86				36.9	
87				36.9	
88				36.9	
89				36.9	
90				36.9	
91				36.9	
92				36.9	
93				36.9	
94				36.9	
95				36.9	
96				36.9	
97				36.9	
98				36.9	
99				36.9	
100				36.9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① 사 업 명	(가칭)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전락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초안)				
② 사 업 시 행 자	(가칭) 배곧대교주식회사				
③ 설 명 회 일 시	2020. 12. 04(16:00)	④ 설명회장소	배곧동 주민센터		
연번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비 고	
1		346		36.6	
2		41		36.7	
3		84		36.2	
4		124		36.3	
5				36.4	
6				36.5	
7				36.6	
8				36.7	
9				36.8	
10				36.9	
11				37.0	
12				37.1	
13				37.2	
14				37.3	
15				37.4	
16				37.5	
17				37.6	
18				37.7	
19				37.8	
20				37.9	
21				38.0	
22				38.1	
23				38.2	
24				38.3	
25				38.4	
26				38.5	
27				38.6	
28				38.7	
29				38.8	
30				38.9	
31				39.0	
32				39.1	
33				39.2	
34				39.3	
35				39.4	
36				39.5	
37				39.6	
38				39.7	
39				39.8	
40				39.9	
41				40.0	
42				40.1	
43				40.2	
44				40.3	
45				40.4	
46				40.5	
47				40.6	
48				40.7	
49				40.8	
50				40.9	
51				41.0	
52				41.1	
53				41.2	
54				41.3	
55				41.4	
56				41.5	
57				41.6	
58				41.7	
59				41.8	
60				41.9	
61				42.0	
62				42.1	
63				42.2	
64				42.3	
65				42.4	
66				42.5	
67				42.6	
68				42.7	
69				42.8	
70				42.9	
71				43.0	
72				43.1	
73				43.2	
74				43.3	
75				43.4	
76				43.5	
77				43.6	
78				43.7	
79				43.8	
80				43.9	
81				44.0	
82				44.1	
83				44.2	
84				44.3	
85				44.4	
86				44.5	
87				44.6	
88				44.7	
89				44.8	
90				44.9	
91				45.0	
92				45.1	
93				45.2	
94				45.3	
95				45.4	
96				45.5	
97				45.6	
98				45.7	
99				45.8	
100				45.9	

시흥시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2/2)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① 사 업 명		(가칭)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초안)			
② 사 업 시 행 자		(가칭)배곧대교주식회사			
③ 설 명 회 일 시		2020. 12. 04(16:00)	④ 설명회장소	배곧동 주민센터	
연번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비 고	
1	김영민	배곧	35-4		
2	김영민	배곧	36-9		
3	김영민	배곧	4-4		
4	김영민	배곧	36-4		
5	김영민	배곧	36-3		
6	김영민	배곧	4-1		
7	김영민	배곧	36-1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① 사 업 명		(가칭)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초안)			
② 사 업 시 행 자		(가칭)배곧대교주식회사			
③ 설 명 회 일 시		2020. 12. 04(16:00)	④ 설명회장소	배곧동 주민센터	
연번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비 고	
1	김영민	배곧	36-3		
2	김영민	배곧	36-5		
3	김영민	배곧	36-6		
4	김영민	배곧	36-9		

김영민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① 사 업 명		(가칭)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초안)			
② 사 업 시 행 자		(가칭)배곧대교주식회사			
③ 설 명 회 일 시		2020. 12. 04(16:00)	④ 설명회장소	배곧동 주민센터	
연번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비 고	
1	김영민	배곧	31-5		
2	김영민	배곧	31-5		

- 여 백 -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① 사 업 명	(가칭)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전역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초안)			
② 사 업 시 행 자	(가칭)배곧대교주식회사			
③ 설 명 회 일 시	2020. 12. 09(16:00)		④ 설명회장소	인원 순도 칸번호이
연번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체 온(℃)
27			010-	36.2
28			010-	36.3
29			010-	36.5
30			010-	36.6
31			010-	36
32			010-	36.6
33			010-	36.7
34			010-	35.9
35			010-	36.7
36			010-	35.9
37			010-	35.8
38			010-	36.2
39			010-	36.5
40			010-	36.2
41			010-	36.0

- 여 백 -

3.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가. 협의기관의견 수렴결과

구분	의견 제출자 (기관)	평가항목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협의 기관	한강유역 환경청	총괄	○ 본 계획은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를 연결하는 배곧대교를 설치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본 계획시행으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사업 계획을 재검토하여야 함 - 계획노선이 랍사르습지로 지정된 보전가치가 있는 습지보호구역을 관통하고 있어, 교각 설치로 인한 송도갯벌의 직접적인 훼손이 불가피하여 습지생태계가 교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계획노선 인근지역은 철새들의 먹이터로 활용되며 산란지도 인근에 위치하여 교량 공사(소음·진동, 오염물질 유출) 및 운영(조류충돌, 빛공해) 시 환경적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됨. 끝.	○ 계획노선 선정 - 시흥배곧신도시와 송도국제도시 간의 특성(도로의 기능)을 고려한 교통연계성, 습지보호지역 저촉 여부, 법정보호종(옥귀도 저어새) 번식지, 환경적측면, 사업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계획노선 입지 대안 5개(안)”과 “해저터널(안)”에 대한 대안을 설정하여 검토한 결과, ○ 습지보호지역 저촉 측면에서 불리하나, 저어새 번식지(옥귀도) 및 갯벌 해양저서생태계 등 생태계 영향 측면, 도로의 연속성 및 기능성 확보, 어민의 통항선박의 항로 확보 및 민자 적격성 검토가 완료된 노선인 “현재 추진(안)”으로 계획함	-
				○ 습지 및 생태계영향 최소화 - 습지영향 최소화를 위하여 교각 개수 최소화(초안) 39개→(본안) 29개), 습지보호지역 통과구간 교각개수(초안) 23개→(본안) 16개), 습지훼손면적 최소화(초안) 3,403.2m² → 167m²) 계획을 수립함 - 또한, 해양환경 및 조류 등 전문가 정밀조사를 통한 번식·서식지, 채식지 등 현황파악, 영향예측(조류충돌·빛공해, 번식지·채식지 영향 등) 및 저감대책을 수립함	반영
				○ 공사시·운영시 소음, 비산먼지 발생 등 영향예측 실시 및 저감 대책수립	반영

나. 행정기관의견 수렴결과

구분	의견 제출자 (기관)	평가항목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행정 기관	경기도 환경 정책과	-	○ 계획노선이 습지보호지역(송도 갯벌) 일부를 통과하고 있으므로 통상적인 저감방안이 아닌 보다 강화된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저감방안을 수립하시기 바람 - 해당지역 주변으로 많은 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본 사업으로 인해 영향이 가중되어 조류 서식 환경 악화와 갯벌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므로 평가서 내 저감방안을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람 - 계획노선은 습지보호지역 훼손 또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구간으로 설정하여야 함	○ 습지훼손 및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계획노선 교각개수 최소화(초안)39개→본안)29개), 습지보호지역 통과구간 교각개수(초안)23개→본안)16개), 습지 훼손면적 최소화(초안)3,403.2㎡→167㎡)등의 계획수립과 ○ 교각 공사시 교각 주변 오탁방지막 설치, 각 교각별 비점오염물질 처리시설(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 습지지역 내 가로등(조도 낮은 Line조명)설치 등 저감대책을 수립함 ○ 교통연계성, 습지보호지역 저촉 여부, 범정보호종(옥귀도 저어새) 번식지, 환경·사업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계획노선 입지대안 5개(안)” 과 “해저터널(안)” 에 대한 대안을 설정하여 검토한 결과, 저어새 번식지(옥귀도) 및 갯벌 해양저서생태계 등 생태계 영향 측면, 도로의 연속성 및 기능성 확보, 어민의 통행선박의 항로 확보 등의 측면에서 유리한 “현재 추진(안)” 으로 계획함	반영
			○ 소음, 미세먼지 등에 따른 환경 피해로 사업지구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상황으로 사업지구 인근 주민에게 다양한 매체를 통해 본 사업에 대한 설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민원이 발생 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 사업지구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본 사업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내용을 지자체 및 환경부 정보통신망 게시, 지자체 공람장소 설정 및 공람, 주민설명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의견 수렴 절차를 적극적으로 실시함	반영
			○ 기 설치된 해양교량의 사후환경 영향조사 및 민원발생 여부 등 사례 분석을 통해 동일한 환경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감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유사사례(을숙도 대교, 신안군 습지통과교량, 송도11공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등)조사를 통한 환경피해여부분석 및 적정 저감대책을 수립함	반영
			○ 공사차량이 주거지역 내를 관통 하지 않도록 차량 이동노선을 설정하여 제시하시기 바람	○ 공사차량 이동노선(주거지 우회 등) 검토·제시	반영

구분	의견 제출자 (기관)	평가항목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행정 기관	경기도 환경 정책과	-	○ 교량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그대로 해양으로 유입될 경우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저감 효율의 극대화를 위해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후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제시하시기 바람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시설용량 산정방법 및 산출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기 바람 -운영 시 비점오염물질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적의 저감 시설을 선정·설치하고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비점오염저감시설(초기우수처리 시설)을 설치하여 교량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인한 영향을 최소토록 계획함 -비점오염저감시설 시설용량산정 방법 및 산출과정, 유지관리계획, 관리주체 등 수립·제시 -설치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지속적으로 관리가능 하도록 관리 주체를 명확히 지정하여 관리토록 계획함	반영
			○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유지관리 사무소에 신재생에너지 적용과 교량 등 시설 조명에 고효율 LED 전등 설치를 검토하고 설계에 반영하시기 바람	○ 유지관리사무소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 수립·제시 - 고효율 LED전등 설치 등	반영
			○ 「미세먼지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건설공사장 공사 시간 변경·조정 세부이행지침」,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매뉴얼」,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경기도 단계별 대응계획」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이행계획 수립 -고농도 미세먼지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시 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 외에 추가적인 저감방안을 단계별로 제시하시기 바람	○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변경·조정 세부이행지침,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매뉴얼,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경기도 단계별 대응계획 등 참고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수립함	반영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구분	의견 제출자 (기관)	평가항목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행정 기관	시흥시 환경 정책과	-	동 사업으로 인해 인접지역의 해양생태환경과 생활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함. 특히 계획노선과 인접지역의 서식 생물종 조사(법정보호종 포함) 및 공사·운영으로 인한 피해예측 방법을 다양화 하여 대책을 보완하여야 하며,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구체적 대책 마련이 필요 함.	현지조사 추가 및 각종 문헌조사 자료를 통한 생태계 분포현황 및 영향여부, 계획노선의 습지훼손 최소화를 위한 저감대책 검토·제시	반영
			계획노선의 공사 및 운영에 따른 인근 학교 및 주거지의 소음·진동·대기질 악화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저소음 포장 외에 방음벽 등 적절한 방지대책을 수립할 것.	- 사업지구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본 사업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내용을 지자체 및 환경부 정보통신망 게시, 지자체 공람장소 설정 및 공람, 주민설명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의견 수렴 절차를 적극적으로 실시함 -공사시 및 운영시 정온시설(학교, 주거지 등) 소음·진동, 대기질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	반영
			동 사업 공사 및 운영 시 토사·유류 등 비점오염원으로 인한 공공수역 수질오염이 예상됨에 따라 해당 관리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관련대책을 수립 및 조치 할 것.	공사시 및 운영시 비점오염물질(토사, 유류 등) 발생 저감대책(오탁방지막, 유류유출로 인한 해양오염 방제장비 설치, 유관 기관 연락망 구축 등) 수립	반영
			사업 추진 시 예측하지 못한 상황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주변 환경에 추가적인 악영향 및 민원이 발생할 경우 즉시 원인을 분석하고 별도 저감 대책을 신속히 강구 하여 환경영향피해 최소화 및 민원을 예방 할 것.	사업 추진 시 예측하지 못한 상황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주변 환경에 추가적인 악영향 및 민원이 발생할 경우 즉시 원인을 분석하고 별도 저감 대책을 신속히 강구 하여 환경영향피해 최소화 및 민원을 예방토록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음	반영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구분	의견 제출자 (기관)	평가항목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행정 기관	시흥시 환경 정책과	-	○ 『자연환경 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 승인기관(부서)에서는 관련법에 의한 인·허가 후 20일 이내에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 산정자료를 경기도(환경정책과)로 통보하여야 함 (문의 : 경기도 환경정책과 ☎ 031-8008-3532)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항목을 포함하여 검토하였거나,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과 같이 개별 특별법 등에 받아야 할(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생략 또는 제외되는 경우 부과대상임	○ 인·허가 완료 후 해당사항 도래시 조치토록 하겠음	반영
행정 기관	시흥시 축수산과	-	○ 공사 시 공사 폐기물 등 해상 유입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탁방지막 설치 및 방제장비(오일웁스, 유흡착제 등) 마련 등 해양오염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공사시 해양오염 방지대책 수립 - 교각공사시 토사유출에 따른 오염방지를 위하여 교각설치 주변으로 오탁방지막 설치 - 공사장비 및 선박의 유류유출로 인한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공사현장내 방제장비(오일웁스, 유흡착제 등) 설치, 유관기관 연락망 구축 등	반영
			○ 아울러 해당 지역은 월곶 및 소래 어업인들의 항구로 이용되고 있는 해역으로, 선박 항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오탁방지막 설치 시 항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사 구간 별 설치	○ 공사시 선박항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계획 수립 - 오탁방지막 설치시 항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사 구간별 설치계획 수립	반영
			○ 대체습지 지정에 대하여는 반드시 우리부서와 사전 협의절차를 거쳐야 함	○ 대체습지 지정시 농업기술센터(축수산과)와 사전협의 이행토록 하겠음	반영
			○ 이 외 다른 사항들은 인근 어업인 의견 청취 및 반영으로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함	○ 공사전·시 등 필요시 인근 어업인 의견 청취 및 반영으로 피해를 최소화토록 하겠음	반영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구분	의견 제출자 (기관)	평가항목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행정 기관	인천 광역시 환경 기후 정책과	총괄	○ 본 사업계획은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배곧신도시~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송도국제도시를 연결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사업 구간 중 송도 갯벌(람사르습지, 습지보호지역,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사이트 네트워크 등재)의 훼손이 예상되므로 - 조사시기, 조사범위, 조사대상 등을 광범위하게 설정하여 조사하고 - 상위계획과의 연계성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 입지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 하여 습지 생태계에 환경 피해가 없는 최적의 대안 마련이 필요함.	○ 생태계 조사 및 환경질 측정 등의 조사는 시기·범위·대상 등을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조사를 실시함 - 조류 : 광역(3km이상) 범위를 대상으로 전문가 정밀조사를 실시(공주대 조삼래 교수 : 2021.04~2021.08) - 해양환경 : 해양생태계, 수질·저질 등 전문가 조사 실시 - 육상환경 : 시점부(배곧신도시) 및 종점부(송도국제도시) 구간을 대상으로 조사 실시 ○ 교통연계성, 습지보호지역 저촉 여부, 법정보호종(옥귀도 저어새) 번식지, 환경·사업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계획노선 입지대안 5개(안)” 과 “해저터널(안)” 에 대한 대안을 설정하여 검토함	반영
		계획의 적정성	○ 본 계획은 시흥시 배곧신도시 ~ 연수구 송도국제도시를 연결하여 간선도로망 구축, 지역간 도시 균형 발전 및 연계기능 강화, 두 경제자유구역을 연결하는 기반시설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시하였으나,	-	-
			○ 동 계획으로 인한 교통량 수요, 송도갯벌 통과시의 영향 등 환경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습지보전법상 행위제한 행위의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예측하여야 함. - 민자 적격성 검토시 활용한 송도 국제도시와 배곧신도시간 교통량 수요분석 결과 및 제2외곽순환 도로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제시 하여야 함.	○ 본 계획으로 인한 교통량 수요, 송도갯벌 통과시의 영향 등 환경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습지보전법상 행위제한 행위의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제시하였으며, ○ 『습지보전법』 제13조(습지보호 지역 행위제한) 저촉여부 검토 결과, “대규모 국책사업으로서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시행 또는 물적 자원개발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에 해당되어 행위제한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됨	반영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구분	의견 제출자 (기관)	평가항목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행정 기관	인천 광역시 환경 기후 정책과	입지의 타당성	○ 송도갯벌습지보호지역 내 교량·교각 설치로 습지생태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고 계획노선 및 인근 지역에 번식하는 저어새·노랑부리백로·검은머리갈매기·검은머리물떼새 서식지의 생태용량 감소, 환경질 저하(먹이감소·소음·빛공해), 이동경로 교란 등으로 인하여 향후 개체수 감소가 우려되므로 습지 생태계에 환경피해가 없는 최적의 대안 마련이 필요함.	○ 시흥배곧신도시와 송도국제도시 간의 특성(도로의 기능)을 고려한 교통연계성, 습지보호지역 저촉 여부, 법정보호종(옥귀도 저어새) 번식지, 환경적측면, 사업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계획노선 입지 대안 5개(안)” 과 “해저터널(안)” 에 대한 대안을 설정하여 검토한 결과, ○ 습지보호지역 저촉 측면에서 불리하나, 저어새 번식지(옥귀도) 및 갯벌 해양저서생태계 등 생태계 영향 측면, 도로의 연속성 및 기능성 확보, 어민의 통행선박의 항로 확보 및 민자 적격성 검토가 완료된 노선인 “현재 추진(안)” 으로 계획함	반영
			○ 계획지역이 습지보호지역이고 저어새 등 법정보호종이 다수 번식 및 서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조사가 겨울철·봄철(2017.2.26~27, 2017.5.12~13, 2020.3.18)에만 3회 실시되었고, 문헌조사도 제3차 전국자연환경조사와 2015~2018년 겨울철 조류동시센서스만 반영되었으며(122쪽), 조사범위도 평가항목별 대상지역 설정시 주변지역의 범위를 3km까지로 제시(47쪽)하였음에도 실제로는 500m 이내만 조사(122쪽)하는 등 생물상(특히 조류 등) 현황조사가 매우 미흡하므로 동·식물상의 종별 출현시기 등을 고려하여 사계절(계절별 4회이상) 조사하여 법정보호종 출현여부 등의 정밀조사가 필요함.	○ 생태계 조사 및 환경질 측정 등의 조사는 시기·범위·대상 등을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조사를 실시함 -조류 : 광역(3km이상) 범위를 대상으로 전문가 정밀조사를 실시 (공주대 조삼래 교수 : 2021.04~2021.08) -해양환경 : 해양생태계, 수질·저질 등 전문가 조사 실시 ○ 또한, 최신의 각종 문헌자료를 통한 생태계 분포현황 및 영향 여부 검토·제시	반영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구분	의견 제출자 (기관)	평가항목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행정 기관	인천 광역시 환경 기후 정책과	입지의 타당성	-사업지역조사 환경에는 IUCN (국제자연보전연맹)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국내 멸종위기1급인 저어새의 주 번식지(남동유수지, 옥귀도)로서 보호가 필요한 지역임. -도요물떼새가 통과하는 가을철과 여름철새가 도래하는 여름철에 계획노선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3km까지 추가조사 실시 -문헌조사도 제4차 전국자연환경 조사와 2019년·2020년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송도갯벌 관련 조사보고서, 주변지역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포함하여 보완조사가 이루어져야 함. -계절별로 출현하는 철새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며 송도 갯벌은 물새류의 휴식·섭식공간 및 생물다양성이 높은 지역으로 보전방안 수립 필요 -흰발농게, 흰이빨참갯지렁이 등 저서생물에 대한 조사가 필요	-	반영
행정 기관	인천 광역시 대기 보전과	대기질	○ (p483) 공사장 내부 포장된 주 도로 및 주변 인근도로에서 날립 먼지의 발생억제에 따른 살수 후 재 비산되는 먼지 발생의 억제를 위한 살수차 운영뿐만 아니라 분진진공흡입차량 등의 운영대책이 필요함	○ 살수차 운영뿐만 아니라 분진진공흡입차량 등의 운영대책 수립·제시	반영
			○ (p484) 공사차량에 의한 토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2단형 (측·후면 살수높이 2m이상) 자동 세륜·세차시설을 공사장 출구에 설치 사용할 것	○ 공사차량에 의한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2단형(측·후면 살수높이 2m이상) 자동세륜·세차 시설을 공사장 출구에 설치토록 계획	반영

구분	의견 제출자 (기관)	평가항목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행정 기관	인천 광역시 대기 보전과	대기질	공사장이 광범위하고 장기간 공사가 진행되므로 토사야적장 및 나대지에 대하여 비산먼지 발생 억제제 살포 및 섬유매트 포설 등의 조치를 할 것을 권장함	토사야적장 및 나대지에 대하여 비산먼지 발생억제제 살포 및 섬유매트 포설 등의 조치계획 수립·제시	반영
			미세먼지 발생공정 위치에 미세먼지 측정기(1등급)를 설치하고 주 출입구 등에서 측정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전광판 시설을 설치 미세먼지 농도 공개할 것	계획노선 사·종점부 구간에 가설 방음판넬 및 미세먼지 측정농도 전광판 설치계획 수립·제시	반영
			- 공사시 투입되는 차량 및 장비 가동시 발생하는 배출가스에 의한 대기질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후 장비는 사용을 금지하고 최신장비(저공해 조치 건설기계 포함*)를 운영하되 불필요한 엔진 공회전을 금지하여야 하며 환경관리인을 배치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저공해 조치 대상 건설기계 -건설기계 중 저공해조치 대상은 다음과 같음 ·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믹서트럭 : 최초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자동차 및 2006년 1월 1일 이후 출고된 차량 중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자동차로 총중량이 2.5톤 이상인 건설기계 · 굴삭기, 지게차 :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Tier1 이하 적용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대상 중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PM-NOx) 부착한 건설기계 · 저공해 신형엔진으로 교체한 건설기계(Tier1→Tier3 이상) ※행정·공공기관 발주 100억원 이상 사업은 2020.4.3.부터 저공해 조치 건설기계 사용 의무(근거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노후 장비 사용 지양 및 최신 장비(저공해 조치 건설기계 포함) 운영, 불필요한 엔진 공회전을 금지, 환경관리인 배치 등 관리·감독 계획 수립·제시	반영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구분	의견 제출자 (기관)	평가항목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행정 기관	인천 광역시 대기 보전과	대기질	○ 공사장 내 폐목, 쓰레기 등을 드럼통에 소각하는 일이 없도록 공사장 근로자 대상으로 교육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 공사장 내 폐목, 쓰레기 등을 드럼통에 소각하는 일이 없도록 공사장 근로자 대상으로 교육 실시 등의 조치 계획 제시	반영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공사장 운영 단축·조정 하여야 함 - 시행시간 :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날 06시부터 21시까지 - 시행근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공사장 운영 단축·조정 계획 제시	반영
	인천 광역시 자원 순환과	폐기물	○ 공사 및 운영 시에 발생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처리 - (생활폐기물) 공사현장에 품목별 분리배출 시설을 설치하여 공사 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을 통해 생활폐기물 배출량을 최소화 하고, 해당 지자체 폐기물처리 계획을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함. - (사업장폐기물) 당해 현장 또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 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대상 여부에 대해 확인하고,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사업장폐기물 처리 규정 등을 이행하여야 함.	○ 공사현장내 품목별 분리배출 시설 설치 및 지자체 폐기물처리 계획을 반영한 지역 실정에 맞는 생활폐기물을 처리계획 수립·제시	반영

구분	의견 제출자 (기관)	평가항목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행정 기관	인천 광역시 자원 순환과	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배출자는 수탁자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폐기물을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후 위탁하여야 함. - (지정폐기물) 공사 시행 시 폐유 등 지정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보관, 배출 기준 등을 철저히 준수하고, 부적정 보관으로 인한 주변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함.	-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 사항에 맞게 폐기물을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후 위탁 - 공사 시행 시 폐유 등 지정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보관, 배출 기준 등의 준수계획 수립·제시	반영
			○ 건설폐기물은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의 기준 및 방법에 의해 적정 처리 - 동 사업 추진 시 시설물 철거, 건축공사 등으로 인한 건설 폐기물이 다량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폐기물 종류별, 성상별 분리배출을 철저히 하여 재활용 가능 폐기물이 매립 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 혼합 폐기물은 성상에 따라 소각, 매립, 재활용 등으로 구분하여 처리하되 직매립 방지를 위한 혼합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직매립을 최소화 하는 노력을 하여야 함.	○ 공사현장내 품목별 분리배출 시설설치 및 지자체 폐기물처리 계획을 반영한지역 실정에 맞는 생활폐기물을 처리계획 수립·제시	반영

구분	의견 제출자 (기관)	평가항목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행정 기관	인천 광역시 자원 순환과	폐기물	-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시 건설 폐기물 종류별 처리방법, 건설 폐기물처리용역의 발주 및 위·수탁 계약, 배출자 신고, 운반·보관·처리기준, 순환골재 의무사용 등은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환경부 예규 제659호, 2019.8.19. 시행)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따라야 함.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5톤 이상의 폐기물이 발생될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준수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토록 하겠음 -5톤 이상의 폐기물이 발생될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토록 계획함	반영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 의무사용 이행 철저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규정에 따라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착공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를 관할 군·구 건설폐기물 담당부서에 제출 (미제출 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	○공사시 관련법에 따라 이행 하겠음	반영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구분	의견 제출자 (기관)	평가항목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행정 기관	인천 광역시 자원 순환과	폐기물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1호에 따라,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거나 같은법 제2조제15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포함 - 「인천광역시 자원순환 기본조례」 (시행 2020.7.14.) (순환골재의 사용 범위) ·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시 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기업 · 군·구(시)비보조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 대지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광장 및 공원 조성공사 · 되메우기 또는 뒷채움용 골재 (모래를 포함한다) 사용 추정량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수도 및 하수도의 관로공사 · 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고, 건축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청사 및 문화·체육 시설 설치 공사 (순환골재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 · 순환골재의 용도는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용 및 차단층으로 하고 관로공사의 경우는 기초다짐용 및 채움용으로하며, 순환골재 의무사용량은 사용용도 별로 각각 골재 소요량의 50%이상으로 한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및 「인천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시행 2020.7.14.) (순환골재의 사용 범위)에 의거 순환골재 의무사용량은 사용용도 별로 각각 골재 소요량의 50%이상으로 계획함	반영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구분	의견 제출자 (기관)	평가항목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행정 기관	인천 광역시 도시 지원과		○ 본 계획은 배곧대교 민간투자 사업으로 동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아래 사항들에 대한 선 검토가 이루어진 후 사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 계획노선 입지대안(5개(안)) 및 해저터널(안)에 대한 검토를 통한 계획노선 선정 및 습지생태계 영향 최소화 대책을 수립함	반영
			○ 본 사업의 계획 노선이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 랍사르 습지,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이동경로 사이트 네트워크를 통과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인근 야생생물의 서식 공간 확보 등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입지의 타당성(계획노선 선정) - 시흥배곧신도시와 송도국제도시 간의 특성(도로의 기능)을 고려한 교통연계성, 습지보호지역 저촉 여부, 법정보호종(옥귀도 저어새) 번식지, 환경적측면, 사업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계획노선 입지대안 5개(안)” 과 “해저터널(안)” 에 대한 대안을 설정하여 검토한 결과, - 습지보호지역 저촉 측면에서 불리하나, 저어새 번식지(옥귀도) 및 갯벌 해양저서생태계 등 생태계 영향 측면, 도로의 연속성 및 기능성 확보, 어민의 통행선택의 향로 확보 및 민자 적격성 검토가 완료된 노선인 “현재 추진(안)” 으로 계획함 ○ 습지 및 생태계영향 최소화 - 습지영향 최소화를 위하여 교각 개수 최소화(초안)39개→(본안)29개), 습지보호지역 통과구간 교각개수(초안)23개→(본안)16개), 습지 훼손면적 최소화(초안)3,403.2㎡→167㎡) 계획을 수립함 ○ 『습지보전법』 제13조(습지보호지역 행위제한) 저촉여부 검토 결과, “대규모 국책사업으로서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시행 또는 물적 자원개발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에 해당되어 행위제한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됨	반영
			○ 「습지보전법」 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을 통과하는 도로 건설은 습지보호지역 내 행위제한에 해당되나, 습지의 기능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없고, 대규모 국책사업으로서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되면 지정권자인 인천광역시장의 행위승인을 받아야 하며 본 사업이 「습지보전법」상 행위제한 적용 배제사항인 대규모 국책사업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해양수산부)에 유권해석을 요청중에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반영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구분	의견 제출자 (기관)	평가항목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행정 기관	인천 광역시 도서 지원과		◦ 「탐사르협약」 제3조 제2호 규정에 의거 인위적 간섭의 결과로 습지의 생태학적 특성이 변하게 될 수 있는 경우 변화에 관한 정보는 탐사르사무국의 상설사무국인 해양수산부에 전달하여야 하며, 제4조 제2호 규정에 의거 긴급한 국가이익상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습지의 구획을 삭제 또는 축소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습지자원의 상실을 보상하여야 하며, 특히 동일지역 또는 여타 지역에 물새 및 종전 서식처에 상당하는 부분의 보호를 위한 새로운 자연보호구를 설정하여야 함.	◦ 추후 습지모니터링을 통하여 습지의 생태학적 특성변화, 습지 구획 변경 등이 수반될 경우 관계행정기관에 관련 내용을 전달토록 하며, 습지자원 상실에 따른 보상대책(새로운 서식처 등)은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토록 할 계획임	반영
	인천 광역시 습지보전 위원회 유○○ (위원)		◦ 상위계획과의 연계성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 제시 필요 ◦ 실질적인 저감방안 고려한 대안 제시 및 추가 습지보호 지역 지정 필요 ◦ 멸종위기종 출현자료 추가 조사 필요	◦ 상위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으로 본 계획노선의 경우 시흥시 도로 건설·관리계획(시도37호) 및 경기 경제자유구역 시흥배곧지구 기반 시설(도로)로 반영(예정) ◦ 교각개수 및 습지훼손면적 최소화 등 저감대책 수립과 대체습지를 계획함 ◦ 법정보호종(멸종위기종 등)에 대한 현지(정밀)조사 및 참고(출현 문헌)자료를 추가 조사함	반영
	박○○ (위원)		◦ 흰발농게, 흰이빨참갯지렁이, 저어새 등 추가 문헌 결과 종합 분석하여 본안 반영 필요 ◦ 인천·경기경제자유구역의 동반 성장과 교통편의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으로 ◦ 전문가, NGO, 주민 등과 함께 관리방안 수립 및 최적의 친환경 해상교량 건설 방안 마련 필요	◦ 법정보호종(흰발농게, 흰이빨참갯지렁이, 저어새 등)에 대한 전문가(정밀) 조사결과 및 문헌 조사자료를 종합분석하여 본안 보고서에 제시함 ◦ 교각개수 및 습지훼손면적 최소화 등 생태적영향을 저감할 수 있는 해상교량 건설방안을 계획함	반영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구분	의견 제출자 (기관)	평가항목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행정 기관	육○○ (위원)		○ 사업자가 제시한 대체 습지 후보지는 기존 서식지이지 이 사업을 통해 만들 수 있는 대체 서식지가 아님 ○ 동 교량건설 사업은 습지보전법 제13조 행위제한에 해당될수 밖에 없어 현재 습지보호지역 유지시 추진이 불가능하며, 습지 보호지역 해제 요건에도 해당 되지 않음 ○ 습지보호지역 우회 노선 검토 필요	○ 『습지보전법』 제13조(습지보호 지역 행위제한) 저촉여부 검토 결과, “대규모 국책사업으로서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시행 또는 물적 자원개발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되어 행위제한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됨 ○ 습지보호지역 우회 관련 “계획 노선 입지대안 5개(안)”과 “해저터널(안)”에 대한 대안을 설정하여 검토 결과를 제시함	반영
	박○○ (위원)		○ 흰발농게, 흰이빨참갯지렁이 조사 자료 누락 ○ 저어새 서식지 이동방향 보완 필요 ○ 사업지역이 습지보호지역, 랍사르 습지, EAAFP 보호습지로서 인천시 입장에서 필요한 사업인지 고민 필요	○ 법정보호종(흰발농게, 흰이빨참갯지렁이, 저어새 등)에 대한 전문가(정밀) 조사결과 및 문헌 조사자료를 종합분석하여 본안 보고서에 제시함 ○ 습지보호지역 우회 관련 “계획 노선 입지대안 5개(안)”과 “해저터널(안)”에 대한 대안을 설정하여 검토 결과를 제시함	반영
	박○○ (위원)		○ 흰발농게, 흰이빨참갯지렁이, 조류의 이동경로 부실 작성 ○ 본 사업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교각개수 및 습지훼손면적 최소화 등 생태적영향을 저감할 수 있는 해상교량 건설방안을 계획함	반영
	최○○ (위원)		○ 흰발농게, 흰이빨참갯지렁이 조사 자료 누락 및 수환경 부분 보완 필요 ○ 해저터널 긍정적 검토 필요 ○ 인천시 입장 정리 필요		반영
	노○○ (위원)		○ 흰발농게, 흰이빨참갯지렁이 등 현황 조사 미비, 중요 서식 개체에 대한 자료 보완 검토 ○ 습지 우회 노선 또는 지하화 노선 검토 추진 필요		반영
	김○○ (위원)		○ 현황조사 보완 필요		반영
	이○○ (위원)		○ 경제청에서는 11-1공구에 2024년 까지 조류대체 습지조성 사업 추진 중임 ○ 현황조사 및 조류 이동방향 보완 필요 ○ 환경피해 최소화 방안 강구 및 대책 수립 필요		반영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구분	의견 제출자 (기관)	평가항목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행정 기관	김○○ (위원)		수환경에서 침식/퇴적량 변화가 랍사르습지로 지정된 송도 갯벌의 생태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필요	본 계획노선 교량건설로 인한 침식/퇴적량 변화가 갯벌에 미치는 영향 검토제시	반영
	오○○ (위원)		- 저어새 등 희귀한 종은 미래세대가 누려야 할 자산으로 교량 건설 사업 우려 - 평가서(초안) 부실 작성	법정보호종(저어새 등)에 대한 전문가(정밀) 조사결과 및 문헌 조사자료를 종합분석하여 조류 분포 및 이동경로, 번식지 및 채식지 현황, 조류충돌·서식지(채식지) 영향검토 및 적정 저감 대책(습지지역내 빛영향 낮은 조명계획 등)을 수립하여 생태적 영향을 최소토록 계획함	반영
	차○○ (위원)		습지는 한번 훼손되면 복원하기 어려움	습지훼손 및 생태적 영향을 최소화한 친환경적 해상교량을 건설하기 위하여 교각개수 및 습지훼손면적 최소화, 환경훼손 최소화 교량(각)형식, 기초형식 선정,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 등의 저감대책을 계획함	반영
	정○○ (위원)		의견 없음	-	-
	전○○ (위원)		송도신도시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보완 필요	본 계획노선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며, 계획노선의 실시 설계에 따른 별도의 교통영향 분석을 진행중에 있음	반영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구분	의견 제출자 (기관)	평가항목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행정 기관	인천 경제자유 구역청 환경 녹지과		○ 송도 11-2공구 인근에는 송도 갯벌을 이용하는 물새들의 만조 시 휴식지로서의 기능에 부합하도록 약 177,497㎡의 대체서식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주탑 및 교량 설치로 인해 해안 및 황새 바위(번식지) 등에서 대체서식지로 이동하는 조류의 비행동선에 미치는 영향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영향이 예상될 경우 교량형식 및 계획노선 입지여부를 재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함. - 계획노선 남서쪽에 위치한 자연섬 황새바위는 저어새 번식지로 이용되고 있어 공사 및 운영 시 조류 번식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고려하여 충분한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공사 및 운영 시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조류(저어새 등)의 분포 및 이동 경로, 번식지 및 채식지 현황, 조류충돌·서식지(채식지) 영향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송도갯벌(송도 11공구 및 송도북단), 시흥갯벌, 옥귀도(저어새 번식지), 소래·월곶포구, 갯골생태공원 등 광범위한 범위를 대상으로 전문(정밀)조사(2021.04 ~ 2021.08, 공주대 조삼래교수)를 실시하였으며, ○ 전문가 조사결과를 토대로 계획 노선 입지관련 대안 5개(안)과 “해저터널(안)”에 대한 대안을 설정하여 검토한 결과, 현재 계획 노선 추진(안)이 유리할 것으로 검토됨 ○ 또한, 공사 및 운영시 계획노선 주변 번식지(옥귀도 : 황새바위) 및 서식지 등에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함	반영
			○ 계획노선 종점부에서 시행중인 송도11공구 공유수면 매립사업과 공사시기가 겹치므로, 누적영향을 검토하여 피해영향이 가중될 경우 추가적인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계획노선 종점부 송도11공구 공유수면 매립사업과의 누적영향 검토결과 및 저감대책을 수립·제시함	반영
			○ 교량 공사시 해양생물 및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안 마련이 필요함. - 사업시행으로 인해 유속 변화, 침·퇴적 등 중장기적으로 해양 환경의 여건 변화가 예상되므로 최대 영향을 고려한 영향예측과 충분한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연속조류 및 해양 침·퇴적 조사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유속변화, 침·퇴적 등 해양환경 변화에 대한 영향검토를 실시하였으며, ○ 공사시 해양생물 및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수 있도록 교각 개수, 저촉면적 최소화 및 오탉 방지막, 초기우수처리시설 등의 저감대책을 수립함	반영

구분	의견 제출자 (기관)	평가항목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행정 기관	인천 경제자유 구역청 환경 녹지과		○ 계획노선이 통과하는 송도갯벌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습지보호지역 내 통과 교각은 총 23개소로 계획하였는 바, 「습지보전법」 제13조의 저촉 여부를 검토·제시하고 계획노선 운영시 계획한 17개소의 비점 오염저감시설 세부 설치 위치 및 유지관리 계획(관리주체, 기간, 주기, 관리방법 등) 등을 수립·제시하고 처리된 우수는 가급적 습지보호지역 외 지역으로 방류 계획을 수립하여 초기우수로 인해 습지보호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여야 함.	○ 『습지보전법』 제13조(습지보호 지역 행위제한) 저촉여부 검토 결과, “대규모 국책사업으로서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시행 또는 물적 자원개발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되어 행위제한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됨 ○ 계획노선 운영시 계획한 16개소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세부 설치 위치 및 유지관리 계획(관리주체, 기간, 주기, 관리방법 등) 등을 수립함	반영
			○ 운영시 소음영향예측 시 시흥시 구간의 정온시설만을 선정하여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으나, 계획 노선 운영으로 인해 송도국제 도시 내 차량통행량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송도국제 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C, 송도 11공구) 개발사업」내 공동주택, 단독주택, 학교시설 등 정온시설에 영향정도를 예측하고 소음목표 기준 초과 시 방음터널과 배곧 대교 교량구간은 생태터널로 조성하는 등 적절한 저감대책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계획노선 운영시 소음영향은 시점부 시흥시(배곧신도시) 및 종점부(송도국제도시) 구간의 시설(주거지 등)을 대상으로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소음목표기준 초과 되는 시설의 경우 송도11공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환경영향평가기 계획된 저감시설(방음벽+저소음 포장)을 고려하여 저감대책을 수립함	반영
			○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c) 토지이용계획은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조류보호를 위하여 습지보호구역과 연결한 구역을 도시생태공원으로 결정 하였으며 연결구역의 건축물은 높이 5층 이하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배곧 대교로 인하여 토지이용계획 변경(도시생태공원 축소 등)이 수반 될 경우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가 필요함.	○ 본 계획노선 수립에 따른 토지 이용계획 변경 수반 등 해당사항 도래시 관계기관과 협의토록 하겠음	반영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구분	의견 제출자 (기관)	평가항목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행정 기관	인천 경제자유 구역청 환경 녹지과		○ 계획노선 대안 중 지하화 적용을 하지 못할 경우 야생조류 서식 환경 영향 최소화와 소음피해 저감 및 조류 서식지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교량과 양측 연결도로 구간을 생태터널(방음 시설 포함)로 조성하는 등 구체적인 대체안 제시 필요함.	○ 교통연계성, 습지보호지역 저촉 여부, 범정부보호종(옥귀도 저어새) 번식지, 환경·사업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계획노선 입지대안 5개(안)” 과 “해저터널(안)” 에 대한 대안을 설정하여 검토한 결과, 저어새 번식지(옥귀도) 및 갯벌 해양저서생태계 등 생태계 영향 측면, 도로의 연속성 및 기능성 확보, 어민의 통행선택의 향로 확보 등의 측면에서 유리한 “현재 추진(안)” 으로 계획함	반영
			○ 사업시행으로 인해 시민, 이해 관계자들의 건의사항 및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행 전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민원해소대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함.	○ 계획노선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본 사업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내용을 지자체 및 환경부 정보통신망 게시, 지자체 공람, 주민설명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의견수렴 절차를 적극적으로 실시함 ○ 추후, 계획노선 운영시에도 민원 해소대책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음	반영
행정 기관	인천 광역시 연수구청		○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아래 사항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 사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
			○ 「습지보전법」 제13조에 의해 습지보호지역 내 행위제한에 해당되나,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되면 지정권자인 인천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습지보전법』 제13조(습지보호 지역 행위제한) 저촉여부 검토 결과, “대규모 국책사업으로서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시행 또는 물적 자원개발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에 해당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지정권자인 인천광역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음	반영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구분	의견 제출자 (기관)	평가항목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행정 기관	인천 광역시 연수구청		◦ 습지보호지역이자 랍사르 습지로 지정된 송도갯벌(6.11km)은 국제적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야생조류 서식 및 도래지로 저어새, 검은 머리갈매기, 도요물떼새 등의 서식지임	◦ 습지 및 생태계영향 최소화 - 습지영향 최소화를 위하여 교각 개수 최소화(초안)39개→(본안)29개), 습지보호지역 통과구간 교각개수(초안)23개→(본안)16개), 습지 훼손면적 최소화(초안)3,403.2m²→167m²) 계획을 수립함 - 또한, 해양환경 및 조류 등 전문가 정밀조사를 통한 번식·서식지, 채식지 등 현황과약, 영향예측(조류충돌·빛공해, 번식지·채식지 영향 등) 및 저감대책을 수립함	반영
			◦ 또한, 송도갯벌은 철새이동경로 서식지 네트워크(FSN)에 등재되어 있으며 최근 화성시, 서천군과 함께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알락꼬리마도요 한반도 네트워크(FEC넷) 협약에 참여하면서 생태계 보전을 위한 중요한 위치, 역할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철새 이동 사이트 내 해당 사업으로 인한 습지 환경 훼손 대책 마련이 필요함		반영
			◦ 2017년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 모니터링 용역 결과에 따르면 송도11공구는 멸종위기생물인 흰발농게의 서식지이나, 본 평가서 내에서는 반영되어있지 않음. 최신 자료를 활용한 생태분야 문헌·현장조사 보완이 필요함	◦ 범정보호종(흰발농게, 흰이빨참갯지렁이 등)에 대한 전문가조사 및 문헌조사 자료를 종합분석하여 본안 보고서에 제시함	반영
			◦ 앞서 언급한 용역 결과에 따르면 송도11공구는 2014~2015년 이후 대규모 토목공사 등으로 조류와 염생생물 군락이 급격히 감소하였음. 따라서 주변 갯벌의 보전 및 훼손 방지 대책 마련 필요성 등에 따라 습지 생태환경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안 선정 및 구체적 대책 마련 필요함	◦ 습지보호지역 저촉여부, 범정보호종(옥귀도 저어새)번식지, 환경·사업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계획노선 입지대안 5개(안)”과 “해저터널(안)”에 대한 대안을 설정하여 검토한 결과, 저어새 번식지(옥귀도) 및 갯벌 해양저서 생태계 등 생태계 영향 측면, 도로의 능성 확보 등의 측면에서 “현재 추진(안)”이 유리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 습지 및 생태계영향 최소화를 위하여 교각개수 및 습지훼손면적 최소화, 해양환경 및 조류 전문가 조사를 통한 조류충돌·빛공해, 번식지·채식지 영향저감 대책을 수립함	반영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구분	의견 제출자 (기관)	평가항목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행정 기관	인천 광역시 연수구청		동 사업이 시행될 경우 발생하는 해수 유동 및 퇴적환경 등의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어류 산란철, 회유시기에 공사를 자제해야 함	본 계획노선 공사 및 운영시 해수 유동 및 퇴적환경 등의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검토 및 적정 저감대책(오탁방지막 설치, 어류 산란철 및 회유시기 공사 지양 등)을 수립함	반영
			p450~486, p507~544 에서 송도 방향 대기질, 소음, 진동 조사 지점이 현저히 부족함. 향후 송도 11공구에 주거시설, 근린생활 시설 등이 입주할 예정으로 본 평가서를 통해서 송도11공구의 피해를 예측하기 어려우니 송도 11공구에도 조사지점을 추가 선정하여 대기질, 소음, 진동의 영향을 예측하여야 함	- 계획노선 종점부 송도국제도시 (11공구) 지역의 대기질, 소음·진동 조사지점을 선정하여 현황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 현황조사결과 및 교통량 등을 토대로 향후 송도11공구에 입주 예정인 주거시설 등을 대상으로 대기질, 소음·진동의 영향을 검토함	반영
			입지대안 선정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을 해결 해야하며,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주변 환경에 대한 추가적인 영향이 발생하거나 예측될 경우 즉각적으로 별도의 저감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 하여야 함	입지대안 선정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을 해결 해야하며,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주변 환경에 대한 추가적인 영향이 발생하거나 예측될 경우 즉각적으로 별도의 저감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 하여야 함	반영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민원인이 요구하는 수준 이상의 대안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며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습지보호지역 저촉여부, 법정보호종 (옥귀도 저어새)번식지, 환경·사업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계획노선 입지대안 5개(안)” 과 “해저터널(안)” 에 대한 대안을 설정하여 검토한 결과, 저어새 번식지(옥귀도) 및 갯벌 해양저서 생태계 등 생태계 영향 측면, 에서 “현재 추진(안)” 이 유리한 것으로 검토됨	반영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구분	의견 제출자 (기관)	평가항목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행정 기관	습지 보호지역 관리 위원회 김○○ (자문위원)	-	배곳대교의 공사와 관련하여 3개 안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3개 안 중 1안이 최적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 같으나 1안과 2안은 모두 람스르 습지인 송도갯벌에 영향을 줄 것이라 예측됩니다.	- 금회 본안시 습지보호지역 저촉 여부, 법정보호종(옥귀도 저어새) 번식지, 환경·사업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계획노선 입지대안 5개(안)”과 “해저터널(안)”에 대한 대안을 설정하여 검토한 결과, - 저어새 번식지(옥귀도) 및 갯벌 해양저서생태계 등 생태계 영향 측면, 도로의 능성 확보 등의 측면에서 “현재 추진(안)”이 유리한 것으로 검토됨	반영
			송도 갯벌에는 환경부 지정 멸종 위기 야생생물 II급이자 해양수산부 지정 보호대상 해양생물인 흰발농게(Austruca lactea)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책임자로 있는 인하대학교 해양과학과 해양동물학 연구실에서 이 사실을 확인한 바 있으며 현재 연구재단 과제의 일환으로 인간 활동의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중입니다. 이 생물은 갯벌 조간대의 상부에 형성되기 어려운 퇴적층인 실트와 모래가 많이 섞인 곳에만 분포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대교가 이들의 서식지 바로 위를 지나가지 않더라도 인근에 건설이 되면 주변의 조석의 흐름과 해류가 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송도갯벌의 퇴적상이 크게 달라져 서식 적합 지대가 없어지고 흰발농게를 포함한 기타 주요 생물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 전 반드시 송도 갯벌에 영향을 주는 조석 및 해류의 변화유무를 예측하는 시뮬레이션 모델링 연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생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파악하는 정밀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 법정보호종(흰발농게, 흰이빨참갯지렁이 등) 분포여부에 대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계획노선 주변에는 분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해양수산부) 등 문헌 자료의 경우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됨) - 공사 전·후 계획노선 주변의 조석 및 해류의 변화유무를 예측하는 시뮬레이션 실시를 통하여 해양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여 검토 결과를 제시함	반영
			환경 영향평가 결과 흰발농게를 포함한 송도갯벌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1안과 2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힙니다.	“계획노선 입지대안 5개(안)”과 “해저터널(안)”에 대한 대안을 설정하여 검토한 결과, 생태계 영향 측면 등에서 “현재 추진(안)”이 유리한 것으로 검토됨	반영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구분	의견 제출자 (기관)	평가항목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행정 기관	습지 보호지역 관리 위원회 김○○ (자문위원)	-	○ 교량 건설에 종합적인 현황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교통량 평가, 교량건설로 인한 대기오염 물질 배출 증감 모델, 습지보호 지역 환경영향 평가, 주민의견 등	○ 계획노선 건설에 따른 교통량 평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증감 모델, 습지보호지역 영향 등의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이행함	반영
			○ 사업자가 제시한 배곧대교 건설 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절감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계획노선 건설 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절감효과”에 검토를 실시함	반영
			○ 교량건설이 필요할 경우, 습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현장 모니터링과 감시가 반드시 필요함	○ 계획노선 공사시 및 운영시 습지 환경 등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함	반영
			○ 송도 갯벌은 배곧대교 뿐만 아니라 송도/배곧신도시 개발에 따른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장기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함. 생태계 복원은 사후영향평가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기 있으므로 사업종료 후 이뤄지는 사후영향 평가 뿐만 아니라, 조사 생물종, 조사정점, 조사시기, 조사방법에 있어 일관성 있는 장기생태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함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갯벌 및 조류 등 생태환경에 미치는 모니터링계획(조사 생물종, 조사 정점, 조사시기, 조사방법 등)을 수립함	반영
			○ 모니터링이 매우 어렵고 위험한 갯벌의 특징을 고려할 때 교량 건설이 될 경우 송도갯벌에 위치한 교량(군자대교, 배곧대교,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의 교각들을 정점으로 갯벌생태계 자동모니터링 시스템 운영방안을 설계시부터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반영
			○ 만조시노출 지역이 거의 없는 송도갯벌의 경우 물새의 휴식처 및 섭식활동이 가능한 대체서식지 조성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계획노선 습지통과로 인한 동·식물의 서식지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체서식지 계획을 검토함	반영
			○ 송도갯벌 주변 생태숲(생태공원) 확충을 통한 생태계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며 시흥시쪽 갯벌의 습지 보호지역으로 추가 지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음		반영
			○ 습지총량제, 습지은행(mitigation bank)과 같은 습지권(credit) 제도 도입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음	○ 습지총량제, 습지은행(mitigation bank)과 같은 습지권(credit) 제도 도입을 검토함	반영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구분	의견 제출자 (기관)	평가항목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행정 기관	습지 보호지역 관리 위원회 김○○ (자문위원)	-	○ 의견 제시에 앞서 평가서(초안) 요약문에 제시된 과업 대상 지역(탐사르습지)의 동·식물 관련 정보가 출현 종수 등 극히 단편적인 내용으로 기술되어 있어 생태계 분야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기에 매우 제한적임을 밝힙니다.	○ 계획노선 주변의 습지보호지역 등을 대상으로 출현 생물 분포종, 종수, 밀도, 종조성 등의 전문가 현지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였으며, ○ 습지지역 교량건설 사례조사를 통한 사업시행전·후 생태환경 변화 등에 관하여 검토함	반영
			○ 본 평가서에는 사업의 기대효과 중 하나로 배곧과 송도 지역 일대의 수도권 관광 중심지 부상을 제시함. 과업 대상 지역은 갯벌 습지보호 지역(탐사르습지)이 지정·관리되고 있는 곳으로서 건강한 자연과 현대적 도시의 조화가 이 지역 관광자원의 주된 가치로 판단됨. 특히, 역동성은 건강한 갯벌이 지닌 중요한 특성인데, 여기에는 계절에 따라 갯벌의 채색을 변화시키는 염생식물군락의 존재와 대단위의 무리를 이루고 집단 서식하는 다양한 조류(바닷새)의 생명활동도 포함됨. 그러나 최근 송도 갯벌에서 수행된 모니터링 결과(인천광역시 연수구, 2018), 이 지역에 출현하는 조류의 종수와 개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음을 보고함. - 교량 건설 예정지인 11공구 갯벌은 드넓은 채식지와 휴식지로 인해 물새류의 의존도가 높은 지역이나 건설공사로 인한 갯벌생태계의 지속적인 교란과 자전거 통행 등 인간의 간섭에 의한 휴식지의 여건 악화와 위협요인의 증가가 이러한 조류 감소의 원인으로 추정되었음.	○ 조류(저어새 등)의 분포 및 이동 경로, 번식지 및 채식지 현황 등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송도갯벌(송도11공구 및 송도 북단), 시흥갯벌, 옥귀도(저어새 번식지), 소래·월곶포구, 갯골생태 공원 등 광범위한 범위를 대상으로 전문(정밀)조사(2021.04~2021.08, 공주대 조삼래교수를 실시하였으며, ○ 조류 조사결과를 토대로 조류 이동경로 및 충돌영향, 번식지 및 서식지 영향 등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영향 최소화를 위한 저감대책(교각개수 및 습지 훼손면적 최소화, 조명영향 최소화 등)을 수립함	반영

구분	의견 제출자 (기관)	평가항목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행정 기관	습지 보호지역 관리 위원회 김○○ (자문위원)	-	따라서 조류의 서식과 관련하여 기존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량건설 공사시와 운영시 발생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예측과 저감 방안, 그리고 불가피한 영향을 보상할 수 있도록 서식 여건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반영
			기타 의견으로 (1) 본 평가서 요약문(초안)에는 흰발농게에 관한 기술이 없는데,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 모니터링 용역 보고서(인천광역시 연수구, 2018)에는 11공구에 흰발농게가 서식하는 것으로 기술되었음. 흰발농게의 희소성(해양보호생물, 멸종위기 야생생물II급)과 생태학적 중요성(생태계 공학종)을 고려할 때, 본 종의 서식 여부와 서식지 현황 및 공사에 따른 영향예측과 저감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2) 불가피한 경관변화에 따른 저감방안으로 경관영향 최소화 실시 및 조경·식재 계획 수립을 제시하였음. 경관변화의 주요 대상이 갯벌이니만큼 손실되는 갯벌 경관의 기능을 보상할 수 있는 이행방안의 수립이 요구됨. 즉, 서식지의 육지화에 따른 육상 식물 조경 및 식재보다는 갯벌의 구성원인 염생식물군락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새로이 조성하는 방안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법정보호종(흰발농게, 흰이빨참갯지렁이 등) 분포여부에 대한 전문가 조사 및 문헌조사(“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해양수산부,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 모니터링 용역 보고서(인천광역시 연수구, 2018) 등)를 실시하여조사결과를 제시하였으며, - 계획노선 갯벌통과로 인한 생태 서식지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체 서식지 등의 계획을 검토함	반영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구분	의견 제출자 (기관)	평가항목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행정 기관	습지 보호지역 관리 위원회 김○○ (자문위원)	-	○ 송도 습지보호지역의 일부 구간을 통과하여 배곧대교 건설 계획을 세우고 이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작성됨에 따라 이를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함.	-	반영
			○ 배곧대교 건설 후보 노선에 직접 저촉되는 송도갯벌 구간은 저어새 서식지 등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곳으로 지속적인 갯벌 오염 및 서식지 훼손 등의 위협을 받고 있는 곳으로 인천시에서는 이 습지의 보호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	-	반영
			○ 람사르 협약에서는 이러한 습지 보호 뿐만 아니라 인류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 배곧대교 건설을 추진할 수 있다고 사료됨.	-	반영
			○ 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발생하는 습지 훼손 혹은 축소하는 경우, 습지자원의 손실을 보충해야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나 내용이 환경영향평가서 내에 어디에도 수록되어있지 않음은 향후, 경기도와 인천시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 이슈가 될 수 있을 것임. 또한 당사국 회의를 통해 이러한 송도 습지보호지역의 현명한 이용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협의하는 절차 마련도 필요하다고 사료됨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생태 서식지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체서식지 등의 계획을 검토함 ○ 습지총량제, 습지은행(mitigation bank)과 같은 습지권(credit) 제도 등의 지속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인천시 및 시흥시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구하고 람사르 당사국과 협의하는 절차를 마련토록 할 계획임	반영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이전에 오염우려 혹은 교란 우려 지점이었기 때문에 영향이 적을 것이다' 라는 표현은 지양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타 지역의 환경영향평가 사례들을 조사한 결과들과 비교분석을 통해 예상되는 영향들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저감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저어새 보호를 위한 조치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제안될 필요가 있음	○ 법정보호종(흰발농게, 흰이빨참갯지렁이, 저어새 등) 분포여부에 대한 전문가(정밀)조사 및 유사사업 사례조사를 실시하여 생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으며, 검토 결과를 토대로 저감방안을 계획함	반영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구분	의견 제출자 (기관)	평가항목	검토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행정 기관	습지 보호지역 관리 위원회 백○○ (자문위원)	-	종합평가 및 결론 부분에서 생물 현황을 언급함에 있어 육상동·식물과 법정보호종만 표기하고 있는데 이는 해양환경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공사에서 해양생물의 현황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근본적인 문제임. 특히 공사 대상지는 법으로 보호하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므로 해양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육상동·식물, 법정보호종 및 해양 생물의 현황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현황조사 및 검토결과를 제시함	반영
			각 분야의 저감방안에서 조류의 경우 ‘버드세이버’ 설치만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언급하는 것은 문제임. 조류의 경우 공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생물체이기 때문에 대규모 구조물인 교량으로 인해 인근 바람의 급속한 변화 등이 위험인자이므로 단순 스티커 작업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함.	조류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교량형식 선정, 차단막(버드세이버)설치, 야간인공조명(Line조명)계획, 공사시기 조절, 사후모니터링계획 수립 등의 저감대책을 수립함	반영
			대교주변 저서생물 서식지영향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저감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모니터링’은 저감방안이 아닌 공사전후 변화의 추이를 추적해가는 것임. 따라서 교각공사로 인한 서식지영향은 근본적으로 다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함.	교량(각) 공사로 인한 습지 및 생태계 영향 최소화를 위하여 교각개수 및 습지훼손면적 최소화, 해양환경 및 조류 전문가 조사를 통한 조류충돌·빛공해, 번식지·채식지 영향 저감대책을 수립함	반영
			송도습지보호지역은 ‘국가해양 생태계 종합조사’에서 해양보호 생물인 ‘흰이빨참갯지렁이(Periserrula leucophryna)’와 ‘흰발농게(Uca lactea)’가 서식하는 지역으로 확인된 지역임. 공사가 진행될 경우 표층퇴적물의 이동으로 이 보호종들의 서식 환경에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임. 따라서 이에 대한 보호방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법정보호종(흰발농게, 흰이빨참갯지렁이 등) 분포여부에 대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계획 노선 주변에는 미 분포 하는 것으로 조사됨(“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해양수산부) 등 문헌 자료의 경우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 - 한편, 공사로 인한 습지 및 생태계 영향 최소화를 위하여 교각개수 및 습지훼손면적 최소화, 저감대책을 수립함	반영

다. 주민의견 수렴결과

구분	의견 제출자 (기관)	평가 항목	제출의견	반영여부(미반영사유)	비고
주민 설명회	주민의견 제출	시흥시	○ 인천 송도지역과 시흥과의 행정 협조 사항은 원활한지? ○ 환경단체의 저항에 대한 대책과 환경영향평가 최종 통과에 대한 세밀한 대책을 요함	○ 전문가 조사 및 각종 문헌자료 조사 실시 등을 통하여 본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영향 검토 및 적정 저감대책을 계획함	반영
			○ 차량 톤수 제한과 생태계 문제가 해결된다면 꼭 필요한 배곧대교 ~ 찬성합니다.	○ 계획노선 통과차량은 승용차 및 화물차 2.5톤이하로 계획하였으며,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정 저감대책을 계획함	반영
			○ 환경적인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두 지역의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생활환경 (대기질, 소음·진동 등) 및 자연 (생태)환경 등의 영향 최소화 방안을 계획함	반영
			○ 만족스러우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불편사항에 대해 대안 마련한 내용이 별도로 첨부되지 않은 점이 아쉽네요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대기질 (미세먼지 등), 소음진동 등에 대한 환경영향 및 교통안전(통과 차량 톤수제한) 등의 검토내용을 제시함	반영
주민 설명회	주민의견 제출	인천 광역시	의 건 없 음	-	-